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의무위탁 선거 대상에 신용협동조합 추가 및 관련규정 정비〉

■ 양부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939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4
1.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의무 위탁선거 대상 규정	4
2. 투표안내문 발송기한을 현행 2일에서 3일까지로 변경	17
3. 위탁선거 경비의 예산총계주의 적용 제외 명확화	19
4. 선거운동의 중지·제한 규정 신설	25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양부남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2. 6.
3. 회 부 일 : 2025. 2. 7.

II. 제안이유

2023년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법률 제19565호, 2023. 7. 18. 공포, 2023. 10. 19. 시행)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지역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아직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선거의 의무위탁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선거관리, 선거운동 기간·방법 및 제재 등 적용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한편, 위탁선거는 현행법규에 따라 선거관리를 위탁하는 단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경비를 납부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납부한 경비를 집행한 후 잔액을 정산하여 위탁단체에 반환하고 있는데, 위탁선거의 특성상 선거 수요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선거관리경비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법적 근거가 없는 세입세출예산 외의 운영은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등록한 후보자가 1명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 후 후보자가 1명이 되어 투표를 실시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선거의 선거운동은 사실상 중지되나 현행법에는 명확한 근거 및 중지 시점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이에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위탁 대상으로 포함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안 제3조, 제13조, 제14조, 제24조, 제35조 등), 위탁단체로부터 납부받은 선거관리경비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경비의 산출기준과 결산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안 제78조제7항·제78조의2 신설), 후보자가 1명이 되어 투표를 실시하지 않게 된 경우 선거운동의 중지 근거와 시점을 명확히 규정(안 제81조 신설)하는 등 위탁선거 관련 규정 전반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위탁 선거로 규정하고 관련 적용 규정을 정비함.

- 1) “공공단체등”, “동시이사장선거” 정의에 신용협동조합 관련 내용을 포함함(안 제3조제1호가목 및 제7호).
- 2) 이사장선거의 선거기간을 14일로 하고 동시이사장선거의 선거일은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11월 중 두 번째 수요일로 함(안 제13조제1항제1호, 제14조제1항 단서 신설).
- 3) 선거별 선거운동방법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를 규정함(안 제24조제3항).
- 4)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함(안 제35조제5항).
- 5) 축의·부의금 제공 제한 주체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를 포함함(안 제36조).

나. 선거관리경비의 세입세출예산 외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산출기준 및 결산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78조제7항 및 제78조의2 신설).

다.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등록된 후보자가 1명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 후 후보자가 1명이 되어 투표를 실시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함(안 제81조 신설).

IV. 검토의견

1.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위탁선거로 규정
및 관련 규정 정비(안 제3조, 제13조 및 제14 등)

가.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의 의무위탁 대상 규정 (안 제3조)

개정안은 총자산 1천억원 이상을 보유한 신용협동조합¹⁾의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의 관리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
1. “공공단체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 ----- --.
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가. ----- -----「산림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에----- -----
나. ~ 라. (생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2. ~ 6. (생략)	2. ~ 6. (현행과 같음)
7. “동시조합장선거”란 「농업협동	7. -----

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라 관할 위원회에 위탁하여 동시에 실시 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조합장선 거를 말하고, “동시이사장선거”란 <u>「새마을금고법」</u>에 따라 관할위 원회에 위탁하여 동시에 실시하 는 임기만료에 따른 이사장선거 를 말한다. 8. (생 략)	----- ----- ----- ----- ----- --- 「새마을금고법」 및 「신용협 동조합법」에----- ----- -----. 8. (현행과 같음)
--	--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은 1960년대 서민·농민의 생활고와
 고금리 문제를 지역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자조(自助) 조직으로 출발한
 비영리 금융협동조합으로서 조합과 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함)로 구분됨.²⁾

1) 2024년 12월 기준, 평균자산 1천억원 이상 지역조합(의무위탁)의 수는 458개, 1천억원 미만 지역조합
 (임의위탁)의 수는 222개임(신용협동조합 제출자료).

2)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2.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란 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9조(공동유대와 사무소) ① 조합의 공동유대는 행정구역·경제권·생활권 또는 직장·단체 등을
중심으로 하여 정관에서 정한다. 이 경우 공동유대의 범위, 종류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2조(공동유대의 범위 등)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종류별 공동유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조합 : 같은 시·군 또는 구에 속하는 읍·면·동. 다만, 생활권 또는 경제권이 밀접하고 행정
구역이 인접하고 있어 공동유대의 범위 안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공동유대의 범위별로 재무
건전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같은 시·군 또는 구에 속하지 아니하
는 읍·면·동을 포함할 수 있다.
2. 직장조합: 같은 직장. 이 경우 당해 직장의 지점·자회사·계열회사 및 산하기관을 포함할 수 있다.

2025년 2월 기준으로 865개의 조합과 약 665만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산규모는 약 153조원임.

《신용협동조합 운영 현황》

(단위: 개, 천명,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월말
조합수	지역	674	677	678	679	680
	직장	122	120	119	115	114
	단체	77	73	72	72	71
	소계	873	870	869	866	865
조합원수	지역	6,036	6,217	6,266	6,209	6,176
	직장	261	256	242	239	234
	단체	268	254	251	251	249
	소계	6,565	6,727	6,759	6,699	6,659
자산 규모	지역	1,161,531	1,350,572	1,409,763	1,440,028	1,442,320
	직장	30,203	29,190	30,217	29,851	29,605
	단체	52,541	54,063	57,032	58,672	58,867
	소계	1,244,275	1,433,825	1,497,012	1,528,551	1,530,792

자료: 신용협동조합

조합과 중앙회의 임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원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조합은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음.³⁾

3. 단체조합: 다음 각목의 단체 또는 법인

가. 교회·사찰 등의 종교단체

3)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임원) ① 조합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 또는 3명을 둔다.

제27조의3(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조합은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71조의2(임원의 선임 및 자격요건) ①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되,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 및 감사·감독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3분의 1 이상은 조합의 임원 또는 간부직원이 아닌 자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제72조(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 ⑧ 중앙회의 임원에 대해서는 제27조의2, 제27조의3제1항, 제31조제2항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그런데, 종전 「신용협동조합법」은 임원선거 관리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임의위탁하고 있었으나, 2023년 7월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총자산 1천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지역조합의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지역조합 이사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회장)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변경⁴⁾하였음.

현행법은 의무위탁선거와 임의위탁선거를 구분⁵⁾하여 의무위탁 대상

4)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3(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②조합은 제27조제2항, 제3항 및 제9항에 따라 선출하는 임원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지역조합은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출하는 이사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72조(임원의 직무와 임기) ⑨ 중앙회는 제7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출하는 중앙회 임원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중앙회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단체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다.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단체[「공직선거법」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에 따른 당내경선 또는 「정당법」 제48조의2(당대표경선사무의 위탁)에 따른 당대표경선을 위탁하는 정당을 제외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단체로서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려는 단체

제4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위탁선거에 적용한다.

1. 의무위탁선거: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선거와 같은 조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는 선거

2. 임의위탁선거: 제3조제1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선거와 같은 조 제1호다

공공단체를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로 하고 있고, 의무위탁 대상단체에 한해 동법상 선거운동 및 벌칙규정⁶⁾ 등이 적용 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의무위탁선거로 변경된 「신용협동조합법」의 조합 및 중앙회를 의무위탁 대상단체에 반영하고 있지 않음.

특히,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은 부칙에서 조합 이사장의 동시선거 일을 임기 시작일에 따라 2025년 11월 12일 또는 2029년 11월 14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앙회장선거에 대한 의무위탁은 개정법률 시행(2023.10.19.) 이후 실시하는 회장 선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⁷⁾하고 있음.

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선거

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장 선거운동

제22조(적용 제외)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선거 외의 위탁선거에는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공공단체등이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하는 선거(「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3에 따른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는 제외한다)에는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를 적용한다.

제10장 벌칙

제57조(적용 제외) ①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선거 외의 위탁선거에는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5조, 제66조제12호, 제68조제1항·제2항제2호 및 제4항·제5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공공단체등이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하는 선거(「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3에 따른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는 제외한다)에는 제58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8호·제10호·제12호·제13호, 제67조, 제6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한다.

7) 법률 제19565호(시행 2023.10.19.)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중앙회장의 선거관리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참고로, 제72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중앙회장 선거관리를 의무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임)

제4조(지역조합 이사장의 동시선거에 따른 임기 및 선출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일부터 2023년 11월 21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사장의 임기가 시작되었거나 시작되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사장의 임기는 2025년 11월 20일까지로 한다.

② 2019년 11월 22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에 새로 선출되거나 임기가 시작되는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되고 다음에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이사장의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사장의 임기는 2029년 11월 20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장 다음에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이사장의 선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최초로 동시 실시하고, 이후 임기만료에 따른 이사장의 선거는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11월의 두 번째 수요일에 동시 실시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11월 12일 동시선거일에는 의무 위탁에 해당하는 총자산 1천억원 이상의 조합이 없으나, 중앙회장의 경우 개정법률 시행(2023.10.19.) 이후 실시하는 회장선거가 2025년 12월에 예정되어 있으므로 2025년 12월 전까지는 현행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향후 실시될 중앙회장 선거(2025.12.)까지 현행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의무위탁선거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과 달리 각종 선거운동 규제(제7장 선거운동)와 벌칙(제10장 벌칙) 등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위탁선거로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의 선거사무관리, 선거운동규제 및 벌칙 등을 적용하게 하려는 것으로, 신용협동조합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봄.

-
1. 제1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장 다음에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이사장의 동시선거일: 2025년 11월 12일
 2. 제2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장 다음에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이사장의 동시선거일: 2029년 11월 14일
- ④ ~ ⑨ (생략)

나.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의 선거기간 및 동시이사장 선거일 규정
(안 제13조 및 제14조)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의 선거기간을 14일로 하고, 동시이사장 선거의 선거일을 그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11월 중 두 번째 수요일로 규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선거기간) ① 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선거(이하 “조합장선거”라 한다)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이사장선거(이하 “이사장선거”라 한다): 14일 2. (생략) ② (생략)	제13조(선거기간) ① ----- -----. 1. ----- ----- ----- ----- 「새마을금고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선거일) ① 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의 선거일은 그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3월 중 첫 번째 수요일로 한다. <단서 신설> ② ~ ⑥ (생략)	제14조(선거일) ① ----- ----- ----- ----- . 다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동시이사장선거의 선거일은 그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11월 중 두 번째 수요일로 한다. ② ~ ⑥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등 의무위탁 대상기관 이사장의 선거기간을 14일로 규정하는 한편, 동시조합장 및 동시이사장의 선거일을 그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3월 중 첫 번째 수요일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의 선거기간을 14일로 하는 한편, 동시이사장의 선거일은 11월 중 두 번째 수요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의 선거기간을 다른 의무위탁 대상기관과 동일하게 14일로 정한 것은 농업협동조합 등 다른 의무위탁 대상기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선거의 공정성 및 위탁선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신용협동조합 동시이사장의 선거일을 다른 의무위탁 대상기관(3월 중 첫 번째 수요일)과 다르게 11월 중 두 번째 수요일로 정한 것은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의 임기만료일 등을 고려하여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 부칙⁸⁾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8) 법률 제19565호(시행 2023.10.19.)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지역조합 이사장의 동시선거에 따른 임기 및 선출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일부터 2023년 11월 21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사장의 임기가 시작되었거나 시작되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사장의 임기는 2025년 11월 20일까지로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장 다음에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이사장의 선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최초로 동시 실시하고, 이후 임기만료에 따른 이사장의 선거는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11월의 두 번째 수요일에 동시 실시한다.

1. 제1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장 다음에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이사장의 동시선거일: 2025년 11월 12일

2. 제2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장 다음에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이사장의 동시선거일: 2029년 11월 14일

다. 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의 적용 대상에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추가(안 제24조)

개정안은 의무위탁 대상기관에 적용하고 있는 선거운동의 주체·기간·
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및 중앙회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①·② (생략)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선거별 선거운동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
1.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5항제1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제3항제1호 및 「산림조합법」 제3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선출방법 중 총회 외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와 「새마을금고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u>이사장선거</u> :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른 방법	1. ----- ----- ----- ----- ----- ----- -----이사장선거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조합원의 투표로 선출하는 <u>이사장선거</u> -----
2.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5항제1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제3항제1호 및 「산림조합법」 제35조제4항제1호에 따른	2. ----- ----- ----- -----

선출방법 중 총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와 「새마을금고법」 제1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는 <u>이사장선거</u>: 제25조부터 제30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3.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중앙회장선거,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5항제2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제3항제2호 및 「산림조합법」 제35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 및 「새마을금고법」 제18조제5항 단서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이사장선거: 제25조·제28조·제29조·제30조 및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에 따른 방법(제30조에 따른 방법은 중앙회장선거에 한정한다)	----- ----- ----- <u>이사장선거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는 이사장선거</u>----- 3. ----- -----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 ----- ----- ----- ----- ----- ----- ----- -----
---	---

현행법은 의무위탁 대상기관에 한하여⁹⁾ 제25조(선거공보), 제26조(선거벽보), 제27조(어깨띠·윗옷·소품), 제28조(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9)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장 선거운동

제22조(적용 제외)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선거 외의 위탁선거에는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공공단체등이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하는 선거(「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3에 따른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는 제외한다)에는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를 적용한다.

제29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30조(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30조의2(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제30조의3(선거운동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및 제30조의4(공개행사에서의 정책 발표) 등의 선거운동방법을 적용하고 있음.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위탁 대상에 추가함에 따라 농업협동조합 등 의무위탁 대상기관에 적용하고 있는 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및 중앙회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지역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정안과 같이 의무위탁 대상 추가에 따른 정비 필요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라.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의 재임 중 기부행위 제한 등
(안 제35조 및 제36조)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이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축의·부의금품 제공제한 대상에 「신용협동조합」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35조(기부행위제한) ① ~ ④ (생략)	제35조(기부행위제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중앙회장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이사장·중앙회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⑤ ----- ----- -----「새마을금고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제36조(조합장 등의 축의·부의금품 제공제한)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등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조합등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등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제36조(조합장 등의 축의·부의금품 제공제한) -----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금고 및 중앙회----- ----- ----- ----- ----- -----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 ----- -----.
--	-----------------------------------

현행 「공직선거법」은 기부행위를 명목으로 부정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범위에서의 기부행위를 제한¹⁰⁾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¹¹⁾하고 있음.

이러한 「공직선거법」과 동일한 취지에서 현행법에서도 농업협동조합 등 의무위탁 대상기관의 조합장·이사장 및 중앙회장이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조합장 등이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 조합 등의 경비임을 명기하게 하는 등 제한을 두고 있음.

개정안은 현행 의무위탁 대상기관의 조합장·이사장 및 중앙회장의 기부행위 제한 등의 규정을 신용협동조합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위탁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금품 제공 등을 통한 유권자 의사의 왜곡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10)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115조(재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 제117조(기부받는 행위 등의 금지) 및 제118조(선거일후 답례금지)

11) 「공직선거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2. 투표안내문 발송기한을 현행 2일에서 3일까지로 변경

개정안은 투표안내문 발송기한을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현행 2일까지에서 3일까지로 변경하고, 현행 규정상 인용 조문의 오기를 수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3조(투표안내문의 발송) 관할위원회는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등록번호, 투표소의 위치, 투표할 수 있는 시간,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투표절차, 그 밖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투표안내문을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u>2일까지</u> 선거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43조(투표안내문의 발송) ----- ----- ----- ----- ----- ----- <u>3일</u> ----- -----.
제57조(적용 제외) ①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선거 외의 위탁선거에는 이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5조, <u>제66조제12호</u> , 제68조제1항·제2항제2호 및 제4항·제5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적용 제외) ① ----- ----- -----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호가목에 따라 공공단체등이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하는 선거(「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3에 따른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는 제외한다)	② ----- ----- ----- ----- ----- -----.

에는 제58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 제8호·제10호·제12호·제13호, 제67조, 제6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한다.	-----제66조 제2항 제8호·제10호·제12호·제13호----- ----- ----- -----.
---	---

현행법은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등재번호, 투표소의 위치 및 투표 가능 시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투표안내문을 선거인명부확정 후 2일까지 선거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안내문의 짧은 발송기한으로 과도한 업무 부담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위탁선거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함.

이에 개정안은 투표안내문 발송 기한을 현행 2일에서 3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안내문 제작·발송 과정을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보여짐.

한편, 현행법 제57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각각 인용하고 있는 제66조제12호와 제66조제8호·제10호·제12호·제13호는 제66조제2항12호와 제66조제2항제8호·제10호·제12호·제13호의 오기이므로 개정안은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3. 위탁선거 경비의 예산총계주의 적용 제외의 명확화 등

개정안은 위탁선거 경비를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에도 불구하고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위탁선거 경비의 결산서를 차년도 4월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8조(선거관리경비) ① ~ ⑥ (생략) <u><신설></u>	제78조(선거관리경비)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제1항에 따라 위탁단체가 부담하는 선거관리경비는 「국가재정법」 제1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u> <u>⑧ (현행 제7항과 같음)</u>
<u>⑦ (생략)</u> <u><신설></u>	<u>제78조의2(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의 보고 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78조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을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u>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경비에 관한 결산개요, 사업설명자료, 성질별·세목별 집행내역 등 결산서를 다음 연도 4월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

가. 위탁선거 경비의 세입·세출예산 외 운영근거 마련(안 제78조)

현행법 제78조¹²⁾는 위탁선거의 준비 및 관리, 계도·홍보, 위반행위의 단속·조사 등 위탁선거 관련 기본적 경비는 위탁단체가 부담하되, 사무편람 제·개정, 위탁선거 사무의 지도·감독 등 통일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탁단체 부담경비의 경우 이를 선거기간 개시일 전 일정기간(60일에서 10일까지)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하고, 납부된 경비는 각급(중앙, 시·도,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맡은 역할에 따라 집행하고 잔액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며,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잔액을 위탁단체에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1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8조(선거관리경비) ① 위탁선거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해당 위탁단체가 부담하고 선거의 실시에 지장이 없도록 제1호의 경우에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위탁신청을 한 날부터 10일)까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위탁관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의무위탁선거의 경우에는 위탁신청을 한 날)부터 **10일까지 관할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위탁선거의 준비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위탁선거에 관한 계도·홍보에 필요한 경비
3. 위탁선거 위반행위의 단속 및 조사에 필요한 경비
4. 제79조에 따른 보상을 위한 재해보상준비금

② 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에서 제7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조합 또는 금고와 그 중앙회가 균분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③ 위탁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1. 위탁선거에 관한 사무편람의 제정·개정에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위탁선거 사무의 지도·감독 등 통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이와 같이 위탁선거 경비는 위탁단체가 지급한 경비로 위탁단체를 대신하여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고 그 잔액을 다시 해당 위탁단체에 반환하는 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 경비를 국가예산으로 편입할 경우 공직선거와 달리 위탁선거 경비의 편성·집행·정산 비효율 등의 문제¹³⁾로 현재까지 법적 근거 없이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해 왔으며, 이에 대해서는 우리위원회의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도개선하라는 반복된 지적이 있었음.

《위탁선거관리경비 예산총계주의 위배 관련 국회 시정요구》¹⁴⁾

구분	시정요구사항 (유형)
2023 회계연도 결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되는 위탁선거경비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제도개선)
2021 회계연도 결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단체 부담경비의 예산 외 운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단체 부담경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사항을 강구할 것(제도개선)
2019 회계연도 결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경비 예산 외 운용 관련 지적이 반복되는 것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더불어 위탁선거경비를 국가재정으로 운용하는 방안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경비 결산심사 기능 강화를 위해 위탁선거경비 감사를 매년 실시하며 결산 내역 및 감사 결과를 매년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할 것(제도개선)

13) 공직선거와 달리 위탁선거는 선거의 방식(직선·간선), 선거운동 방법, 투표소 수 등이 달라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곤란하고, 동시 조합장선거에서 무투표 등 사유 발생시 위탁단체별로 경비 정산이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D-brain 시스템 상 경비 처리가 불가함(경비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위탁선거경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14) 이외에도 2018회계연도 결산 및 2016회계연도 결산에서도 동일한 지적이 있었음.

이에 개정안은 위탁선거 경비를 예산총계주의¹⁵⁾에도 불구하고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위탁선거 경비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하고 있는 현행 방식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같이 개별 법률에서 예산총계주의의 예외 적용을 명시하는 입법례가 반복될 경우, 국가재정 통제를 위한 원칙인 예산총계주의가 약화될 우려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나. 위탁선거 경비 산출기준 마련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안 제78조의 제1항)

현행법¹⁶⁾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기관의 의견을 들어 선거관리 경비 산출기준을 정하도록 하면서, 위탁선거 경비 산출의 기준 등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¹⁷⁾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5)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② 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8조(선거관리경비)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기관의 의견을 들어 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을 정하고 이를 관할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위원회는 그 산출기준에 따라 경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17)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40조(경비산출) 관할위원회가 선거관리경비를 산출하는 경우 적용하는 선거기간 및 단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기간은 법 제13조에 따른다.
2. 관할위원회 위원의 수당·여비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른다.
3.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의 수당·여비는 제17조제9항 및 제25조제5항에 따른다.
4. 공정선거지원단원의 수당·실비는 제5조제7항에 따른다.
5. 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의 수당·식비는 제24조제3항에 따른다.

국가의 세입·세출예산은 그 편성단계부터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를 통해 산출근거에 대한 구체적 물량·단가의 타당성 및 합리성 등에 대한 통제를 받고 있으나, 현행 위탁선거 경비는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등 이에 대한 외부통제가 없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개정안은 현재 외부통제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규칙으로만 정하게 되어있는 위탁선거 경비 산출기준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위탁선거 경비 산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 위탁선거 경비의 결산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안 제78조제2항)

개정안은 현행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46조제3항¹⁸⁾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별도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위탁선거 경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감독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6. 시간외근무수당, 일용임금,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특근매식비, 차량·선박비, 국내여비 등은 선거관리경비 산출 당시의 정부고시가격 또는 정부의 기준요금 [「국가재정법」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의 기준단가 및 요금을 포함한다]에 따른다.

7. 그 밖에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의 단가는 시가 또는 실제 소요되는 가격에 따른다

18)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46조(경비의 검사 등)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경비에 관한 결산개요, 사업설명자료, 성질별·세목별 집행내역 등 결산서를 다음 연도 4월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021.8.30. 시행).

참고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¹⁹⁾에 따라 운용되는 녹색자금도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결산서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관리경비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보다 안정적인 위탁선거 관리를 위하여 현실에 맞게 규정을 보완하려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1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녹색자금결산서의 국회 보고) 산림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녹색자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녹색자금결산의 개황과 분석에 관한 서류
2. 녹색자금 결산명세서
3. 전년도 녹색자금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에 관한 사항

4. 위탁선거 운동의 제한·중지 규정 신설

개정안은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등록한 후보자가 1명이거나 후보자 등록마감 후 후보자가 1명이 되어 투표를 실시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위탁선거 운동을 중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81조 (생략)</u>	<u>제81조(선거운동의 제한·중지) 위탁 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등록한 후보자가 1명인 경우 또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가 1명이 된 경우로서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이 법에 따른 해당 위탁선거의 선거운동은 이를 중지한다.</u> <u>제82조 (현행 제81조와 같음)</u>

현행 「공직선거법」²⁰⁾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후보자 등록 마감 후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선거구의

20) 「공직선거법」

제275조(선거운동의 제한·중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후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아니하게 되어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이 법에 의한 해당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해당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운동은 이를 중지한다.

후보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아니하게 되어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해당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후보자가 단독 출마하는 경우 등 선거운동이 불필요한 상황에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실정이며, 특히 의무위탁 대상기관의 조합장 및 이사장 선거에서는 단독 출마 비율이 높아 불필요한 선거운동이 지속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의무위탁 대상 조합 등의 조합장·이사장 경선 현황》²¹⁾

(단위: 개, %)

구 분	2023 동시조합장선거				2025 동시이사장선거	합 계 (비율)
	계 (비율)	농협 (비율)	수협 (비율)	산림조합 (비율)	새마을금고 (비율)	
조합(금고)수	1,347	1,115	90	142	1,101	2,448
투 표	1,057 (78.5)	891 (79.9)	74 (82.2)	92 (64.8)	358 (32.5)	1,415 (57.8)
무투표	290 (21.5)	224 (20.1)	16 (17.8)	50 (35.2)	743 (67.5)	1,033 (42.2)

이에 개정안은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등록된 후보자가 1명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 후 후보자가 1명이 되어 투표를 실시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위탁선거 운동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불필요한 선거운동을 방지하고, 선거운

21) 신협의 경우 비경선 조합수의 비율이 2022년(68.1%), 2023년(75.2%), 2024년(64.7%)으로 경선 조합수의 비율보다 높은 실정임.

동에 따른 경비 및 행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안정적인 위탁선거 관리를 위하여 현실에 맞게 규정을 보완하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6